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조승래 · 김동아
박해철 · 전현희 · 차규근
김원이 · 김재원 · 박지원
김교홍 · 민홍철 · 김용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,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·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참고로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·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.

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‘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’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

-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0조 및 제13조).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
· 조정한다”를 “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
· 조정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청소년정책위원회)”를 “(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”를 “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청소년정책위원회”를 각각 “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성평등가족부장관이”를 “국무총리가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”을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 중 “성평등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“청소년정책위원회”를 각각

“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3. 교육부장관
4. 통일부장관
5. 법무부장관
6. 행정안전부장관
7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8. 산업통상부장관
9. 보건복지부장관
10. 고용노동부장관
- 10의2. 성평등가족부장관
1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
- 11의2. 기획예산처장관

제13조제1항 중 “청소년정책위원회”를 “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년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

행일부터 1개월 안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5호·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청소년정책의 총괄·조정) 청소년정책은 <u>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·조정한다.</u>	제9조(청소년정책의 총괄·조정) ----- <u>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·조정한다.</u>
제10조(청소년정책위원회)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.</u> ②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1. ~ 6. (생략) ③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④ 위원장은 <u>성평등가족부장관</u> 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	제10조(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소속으로 <u>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</u> 를 둔다. ② <u>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<u>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④ ----- <u>국무총리가</u> ----- ----- ----- <u><후단 삭제></u>

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1. 재정경제부차관
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

3. 교육부차관

4. 통일부차관

5. 법무부차관

6. 행정안전부차관

7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
8. 산업통상부차관

9. 보건복지부차관

10. 고용노동부차관

<신 설>

11. 중소벤처기업부차관

11의2. 기획예산처차관

12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

13. (생 략)

1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

15.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16.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

1. 재정경제부장관
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3. 교육부장관

4. 통일부장관

5. 법무부장관

6. 행정안전부장관

7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8. 산업통상부장관

9. 보건복지부장관

10. 고용노동부장관

10의2. 성평등가족부장관

1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1의2. 기획예산처장관

12. -----위원장

13. (현행과 같음)

14. -----중앙행정기관의 장

15. -----위원장-----

16. -----위원장-----

축하는 청소년 ⑤ (생 략) ⑥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에서 심의 · 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 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청소년정책위 원회</u>에 <u>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</u> 를 둔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청소년정책 위원회</u> 및 <u>청소년정책실무위원 회</u>의 구성,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제13조(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)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 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 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-----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<u>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<u>청소년정책조 정위원회</u>----- -----. ⑦ ----- -----<u>청소년정책 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13조(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